안 내 문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간 조합에서는 창립총회 이후로 사업부지 내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하루빨리 인·허가 기일을 앞당겨 우리모두의 염원인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책의 하나가 엘지로주택조합설립인가 입니다.

당 조합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17년 1월 11일 평택시에 신청할 예정이오니 조합원님께서는 가입시와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서류를 2017년 1월 10일까지 조합사무실 또는 주택홍보관(M/H) 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서류검토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엘지로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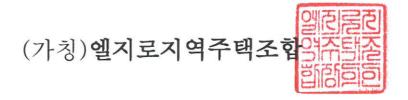
※ 조합사무실 (전화) 031-377-4748 (팩스) 031-374-4222

(우1770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034

홈페이지: http://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org/

※ 첨부 1건 (무주택 판단기준 참조)





조합원자격 판단기준

- 1. 세대주일 것(세대주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서울,경기,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3.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전용85㎡ 이하의 주택이라도 2가 구 소유하면 유주택자 입니다)
- 4. 업무용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 입니다.
- 5. 상속,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 입니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인 세대주가 직접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적용대상이 아님)
- 7. 폐가 또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입니다.
- 8.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에는 유주택자(전용85㎡ 이하 1채는 제외) 이외에 청약당첨자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지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되지 않는다.